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009. 11. 4. (수)

국 회 정 보 위 원 회

● 목 차 ●

I. 공청회 개요	1
1. 목 적	3
2. 일 시	3
3. 장 소	3
4. 안 건	3
5. 진술인	3
6. 진행방법	4
7. 세부일정	4
II. 진술요지	5
◆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7
◆ 김성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변호사)	19
◆ 류신환(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35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5
III. 참고자료	75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77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103
◆ 진술인 이력사항	121

I . 공청회 개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 목 적

현재 우리위원회에 제정법안으로 회부되어 있는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이를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

2. 일 시 : 2009. 11. 4(수) 14:00

3. 장 소 : 국회 제3회의장[국회의사당 245호실]

4. 안 건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5. 진술인 : 4인(여·야 추천)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김성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변호사)
- 류신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진행방법

- 가.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함
- 나.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로 진행함.
- 다.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발표, 위원과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함.
- 라.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각 10분 이내로 함.
- 마. 첫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함.
- 바.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 및 방청인 질의는 허용하지 아니함.

7. 세부일정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4:00	개 의	
14:00~14:10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공청회 진행순서 및 방식 안내	
14:10~15:00	진술인 주제발표	각 10분
15:00~16:00	질의·답변	10분(첫질의), 5분(추가질의)
18:00	산 회	

II. 진술요지

◆ 김상경(동국대 법학과 교수)	7
◆ 김성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변호사)	19
◆ 류신환(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35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5

○ 진술요지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비밀보호법안에 관한 의견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I. 국가비밀의 보호·관리를 위한 법률제정의 의의

- 오늘날 주요 국가들은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비밀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고 있으며, 국가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물론 이 경우에도 국민의 알 권리보장이란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정보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국가기관의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인 국가비밀을 비공개정보로 규정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국가비밀을 보호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가비밀의 보호는 적극적인 형태와 소극적인 형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형태는 방첩법, 원자력법, 국가안전보장법 등의 법률로 국가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형벌로 처벌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들을 국가비밀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형태이고, 소극적인 형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에서 국가비밀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호하는 형태임.
- 국가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며, 현대와 같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간에 전 분야에 걸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비밀의 보호는 필수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국가의 이익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이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비밀을 철저히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비밀은 사전적 의미로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의 내용”인데, 이를 기초로 국가비밀을 정의하자면 “일부 제한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이익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은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현재 국가보안법, 형법과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 등 실정법에는 국가비밀에 대한 정의 규정들이 있으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에는 제3조에 비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 따르면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비밀이라 하고 있음.
- 국가비밀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 중 핵심에 해당하는 법령은 보안업무규정인데, 동 규정 제2조 제1호는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비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이렇게 우리 현행법에서 비밀에 대하여 정의하는 규정들은 있으나, 국가비밀의 관리나 보호에 관하여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은 없음.

-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비밀의 관리·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안업무규정을 적용하였음. 그러나 동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란 점에서 위헌의 논란이 있음. 왜냐하면 국가비밀의 침해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서도 국가비밀은 제외되어 있음. 국가비밀침해에 대한 처벌과 국가비밀의 비공개는 신체의 자유와 알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에 따라 국가비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에서만 설정되어야 함.

- 국가비밀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비밀성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도 안 됨.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비밀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어야 하고 그 대상 및 범위도 목적에 맞게 제한되어야 함. 국가비밀에 대한 이러한 조건은 국가비밀과 관련하여 국가의 권력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 법률에 의하여 국가비밀의 관리·보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

II. 국가비밀보호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 국가비밀보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문제라 할 수 있음. 현행 보안업무규정은 국가기밀 보호라는 정보를 통제하는 기능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위헌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국가비밀의 보호·관리에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공개 및 정보수집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비밀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는 법률적 근거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국가비밀의 관리와 보호는 국가 중요정보의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함.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가진 기본권은 아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기본권으로 양심·사상·지식 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가 언론 등에 의하여 개방되어 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중요한 기본권임.

-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보수집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국민이 책임있는 의사형성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라서 정보의 접근과 수집에 있어서 정당한 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중요함. 따라서 국가비밀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 기본권 역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함.

-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 정보환경 등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양면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국가비밀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비밀관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상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률의 제정은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그동안 국가비밀의 지정과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탄을 받아 왔던 대외비 제도를 폐지한다거나, 비밀지정과 해제를 법률에 따라 기존보다 엄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지정된 비밀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동 법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Ⅲ. 법안의 내용에 관한 검토

- 국가비밀보호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내용상 여러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용은 비밀의 개념정의와 범위, 비밀의 지정, 비밀관리기관의 범위, 비밀누설과 관련한 처벌조항 등임.
- 비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 먼저 법률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밀의 개념을 보면, “비밀이라 함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오늘날 국가의 안전보장은 군사적·외교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자원, 과학기술, 대형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국가의 비밀은 군사 및 외교상의 정보로서 이것이 누설되면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 비밀과 군사·외교상의 정보는 아니지만 이러한 정보의 누설 역시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비밀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인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의 비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번 법률안을 보면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까지 포함하는 비밀을 국가비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이 변천·확대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즉 국가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이해하면 국가비밀의 개념은 국가안보의 개념이 확대된 만큼 국가비밀개념도 포괄적인 안보개념에 맞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 이렇게 국가비밀의 개념이 변천하면서 비밀의 범위 역시 확대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그렇지만 국가 간 정보전쟁의 시대에 국가이익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가 사적 영역의 정보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서 비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봄. 또한 국가비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국가비밀의 보호목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봄.

○ 비밀의 지정에 대하여

- 법률안에는 비밀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비밀지정의 경우 국가비밀이 갖는 추상성 때문에 자의적 지정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법률안 제5조는 비밀의 지정에 대하여 원칙을 규정하여 자의적인 비밀지정을 금지하고 있음. 즉 동 조 제3항은 법령의 위반사실의 은폐, 업무 수행상의 과오 또는 과실 등의 은폐,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제한 또는 지연 등의 목적으로 비밀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물론 비밀의 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의적 지정이 될 경우 이에 대한 명문의 견제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제재가 가능함. 그리고 형사처벌조항을 명문화할 경우 공직자가 비밀취급을 기피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안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음.

○ 벌칙조항에 대하여

- 법률안 제28조는 처벌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대상을 불특정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음.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취재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렇지만 여기서 ‘누구든지’의 표현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익을 해할 목적을 가진 자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 법률안 제33조의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통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이 많아서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수용된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에 대한 비밀이라면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어느 정도 엄격하게 규정되어도 된다고 봄.

- 범죄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벌칙조항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에서 적정한 법정형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국가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벌칙조항은 기존의 군사기밀보호법과의 비교할 때 무거운 법정형은 아니고, 독일이나 미국 등 외국의 예를 비교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요도에 따라 국가비밀이 구분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급 분류에도 불구하고 국가비밀은 전부 중요하다는 점과 처벌의 정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차등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비밀의 중요도와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도 달리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봄.

IV. 맺으며

- 고도의 정보사회가 도래하고 국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가비밀의 보호와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법률적 근거를 통하여 국가비밀의 지정과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며, 자의적 비밀 지정을 막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보장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법률의 제정으로 국가비밀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비밀의 범위가 확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밀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점도 있음. 또한 국가비밀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비밀의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음.
- 또한 비밀보호법의 제정은 현행 보안업무규정의 위헌시비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의 구체적 보장과 국가작용을 법에 기속시킴으로써 법치행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진술요지



김 성 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변호사)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 성 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변호사)

I. 법률안의 제정 취지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서 현행 「보안업무규정」은 그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의 비밀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으로 비밀을 보호 및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밀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의 지정·보호·해제 및 침해행위 처벌 등 비밀의 보호·관리에 관한 전 과정을 규율하기 위하여
- 정부에서는 2009. 9. 2. 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II. 법률의 형식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도록 함.

- 비밀의 구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보안업무규정은 국민의 알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의 형식이 아닌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현행 보안업무규정은 우리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음.
- 또한,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비밀 보호 및 관리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구비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도 법률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함.

Ⅲ. 법률안을 평가하는 두 가지 요소

- 민주주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국가업무에 대하여 알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한 나라의 발전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뒤 돌아 볼 때 국가안보라는 명제는 국민과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로 남아 있어야 할 일정한 정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비밀을 생산한 기관이 비밀을 지정한 목적에 따라 해당 비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 즉, 국민의 알권리와 비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안보라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가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가 정부제안 법률안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IV. 법률안 주요 쟁점

1. 비밀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1호)

“비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인 반면, 비밀보호법에 따른 비밀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비공지성)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실질비성)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형식비성)”을 말함.
- 다시 말하면, 현재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사항만이 비밀로 지정될 수 있지만, 비밀보호법안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 뿐만 아니라,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 또는 지식도 비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되어 비밀의 범위가 확대됨.
- 비밀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제안 법률안에서는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의 필요정도에 따라 비밀의 지정요건을 보안업무규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비밀의 범주를 7개로 분류하여 비밀 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비밀구분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는 오히려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도 탈냉전 이후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 못지않게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도 국가 생존의 필수요소인 점을 고려한다면, 비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평가되고, 현재 정부부처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비밀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비밀의 개념에 국익사항(national interest)을 포함하여 기존의 국가안보 관련 비밀에 준하여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있음.
- 다만, 자의적인 비밀지정과 등급부여의 잠재적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해서 비밀 지정권자로 하여금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identify), 기술할 수(describe) 있을 것’을 비밀 지정의 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법률안의 비밀구분 비교>

구분	현행 보안업무규정	비밀보호법안
I 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치명적인 위협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II 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협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III 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위협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자의적 비밀지정 방지장치

제5조(비밀의 지정원칙) ① 비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는 비밀로 지정할 수 없다.

1. 법령 위반사실의 은폐
2. 업무 수행상의 과오 또는 과실 등의 은폐
3.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제한 또는 지연

- 비밀의 지정원칙으로 “비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법령 위반사실, 업무 수행상의 과오 또는 과실의 은폐,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제한 또는 지연을 목적으로 비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법률안에서는 자의적 비밀지정원칙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밀 지정의 원칙 및 자의적 비밀지정 방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비밀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실의무¹⁾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른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므로, 자의적 비밀지정 방지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확보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안에서는 비밀의 지정(인가)권자과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를 분리하고, 비밀의 지정은 해당등급의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비밀지정권자만이 행하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에, 실무자의 자의적인 비밀지정 및 과도한 등급지정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반해, 현행 보안업무규정에서는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의 관리·보관·열람 등 협의의 취급권 뿐 아니라 비밀의 생산(분류·지정)과 관리·해제에 이르는 포괄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업무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비밀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자의적 비밀지정 방지장치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보이고,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만 비밀관리기관에서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인 비밀관리로 인한 국가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3. 비밀 원본의 활용 및 이관

제11조(비밀의 보호·관리의 원칙) ① - ④ (생략)

⑤ 비밀의 원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비밀을 지정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비밀을 지정받은 개인 또는 기업체를 말한다)에서 활용·보관하여야 한다.

- 법률안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비밀의 원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비밀을 지정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에서 활용·보관”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비밀의 원본을 보호기간 만료전에 각급 비밀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비밀전문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및 비밀지정 해제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²⁾, 이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비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안보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2) 17대 국회 이광철 국회의원 발의안의 내용과 유사한 주장임.

- 즉, 비밀의 재분류 및 해제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밀의 실제적 내용과 비밀 유지 필요성 및 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임. 이러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비밀 재분류 및 비밀해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정된 비밀을 보호기간까지 계속 현상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는 비밀 재분류 및 해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비밀의 지정이유가 비밀지정기관에서 업무를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비밀을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비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안보확보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 등 현행법 체계도 비밀 또는 기록물을 지정(생산)한 기관이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활용·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체계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됨.

4. 비밀의 최대보호기간 및 자동해제사유

제20조(비밀의 해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때
2. 비밀 지정권자의 해제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비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비밀은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정일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 및 통일·외교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정보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조약 또는 국제협약의 위반을 초래 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 제20조제1항은 ①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때, ② 비밀지정권자의 해제요청이 있는 때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그 비밀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항은 보호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비밀은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되는 연도의 말에 비밀에서 자동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조 제2항 단서의 각호에서는 자동해제의 예외사유로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제6호에서는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비밀 자동해제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사항에 따라 자동해제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1) 비밀의 최대보호기간을 비밀의 내용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3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2) 30년의 비밀 최대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인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비밀은 해당 비밀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점(안 제5조), 그 보호기간도 비밀보호에 필요한 정도로 정해져야 하는 점, 개별 비밀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밀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그 최대보호기간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안에서의 30년은 비밀의 최대보호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개별 비밀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안에서 비밀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지정권자가 비밀지정의 원칙에 따라 정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안에서 비밀의 최대보호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한 이유를 추정하건데,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외국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외교문서를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우에도 비밀의 자동해제(automatic declassification) 기간을 2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음.[executive order 13292, section 3.3 (e)]
- 비밀의 자동해제제도의 신설은 비밀이 자동해제 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비밀로 관리하여야 할 대상만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비밀을 관리할 수 있고 그 결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됨.
- 다만, 30년이 경과하더라도 유효한 전시계획의 경우 등 안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속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제6호의 경우(“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 비밀의 자동해제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을 법률에서 예시하는 것이 입법론상 바람직해보임.

5. 비밀관리기관의 임무와 권한

제23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비밀관리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밀보호 기술개발 및 보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교육 및 이행 여부 확인
5.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취약점 보완·지원
6. 비밀의 등급별 보유현황 파악 및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위 조사
7. 비밀을 지정하거나 비밀의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② (생략)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위를 조사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밀의 분실·누설 등에 따른 피해의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지정·보호·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비밀 관리 전담 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운영
3. 소관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 지정현황 기록 유지
4. 소속기관 및 감독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비밀 관리 실태 등에 관한 감사 및 점검
나. 비밀 소유현황 및 비밀 지정현황의 기록 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다. 그 밖에 보안업무 및 비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소관 비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국가정보원의 업무로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안 제23조제1항제1호), '비밀의 분실·누설 등에 관한 경위조사'(제6호), '비밀을 지정하거나 비밀의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제7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위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국가정보원법 및 현행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고유 업무를 법률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법률안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할 것임.
- 안 제23조제1항제6호의 경위조사의 경우에도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사태에 대한 사후적 개입이고,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의 개입요청을 전제한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의 권한확대와 관련하여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물론 비밀의 분실·누설 등에 따른 피해의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경위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을 요구하는 것은 비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가안보수호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됨.
- 한편, 일상적인 ‘비밀관리실태 등에 감사 및 점검’(제24조 제4호 가목)과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지정현황의 기록유지에 관한 실태조사’(제4호 나목), ‘그 밖에 보안업무 및 비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제4호 다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비밀관리기관으로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

6. 비밀보호를 위한 처벌규정

제11조(비밀의 보호·관리의 원칙) ①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탐지·수집) ①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업무상 비밀의 누설 등) ①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접유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가중처벌) ①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제33조(위법성의 조각) 제28조 및 제29조의 행위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목적범) 비밀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국가비밀’의 탐지·수집·누설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제한된 경우의 비밀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만이 존재함.³⁾

3) 형법 및 군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이 처벌대상임.

- 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일반적 처벌규정은 비밀의 실효적 보호장치로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비밀의 탐지·수집에 대한 처벌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처벌조항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비밀보호를 위한 유사한 입법례(군사기밀보호법 :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경우 10년 이하, 누설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⁴⁾, 산업기술유출방지법⁵⁾: 10년 이하의 징역)에 비추어 보아 과도한 형량이라는 지적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 정부안은 안 제28조에서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제33조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함과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됨.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상의 비밀’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벌이 가능함.

- 4)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누설) ①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5)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6. 제11조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제36조 (벌칙) ①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 전체적 평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비밀관리의 제도적 산물이라기 보다 과거 정보기관의 비정상적 운영의 기억에 따른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부 제안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비밀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임.

즉, 정부제안 법률안은 비밀의 정의조항 및 비밀의 범주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비밀지정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또한 비밀관리기관이 비밀의 지정·보호·재분류 및 해제에 관한 전반적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인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비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가 이익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진술요지

류 신 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류 신 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I. 국가이익 개념의 모호성과 삭제 필요성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비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의 개념은 해석에 따라서는 국민 일반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과 사안들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사기업의 연구, 개발, 영업, 제조'에 관한 사항들까지 관련이 될 수 있는 개념임.
- 여론의 적절한 수렴을 통한 정부 정책의 투명한 수립 및 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국가·사회 운영 원리임.
- 그런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등 비밀지정권자로 정해진 자가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실을 비밀로 지정하여 위 법률안에 따라 보호, 관리하게 되면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가 비밀이 확대되어 공개와 공론화의 과정없이 정책이 수립되고 사후적으로도 사회적 비판과 통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큼.

- 그러한 경우 법률안의 적용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적절한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 법률안에서 '국가안전보장'만을 명시하여 비밀의 범위를 정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통상·과학기술의 경우 법률안이 대상으로 하는 비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이 목적으로 하는 비밀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률안 제2조와 제4조 제1항 등의 각 조항에서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 또는 '국가이익'이라는 개념표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II. '탐지' 금지 조항의 삭제 필요성

- 법률안 제11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침해하거나 부정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동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중 '탐지'라는 행위 태양은 '수집'이라는 행위 태양에 속하는 정보 '취득'의 전단계로서 '비밀 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됨.
- 헌법상 언론사 및 개인의 언론 자유의 내용에는 취재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정보의 취재 행위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취재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

- 대상 정보를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는 취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비밀정보가 어떤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밀 관리자의 입장에서 비밀정보라는 이유로 탐지(취재)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취재활동 자체에 형사벌칙 규정(법률안 제28조 제1항)을 적용한다면 공익 목적의 취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나아가 공공 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큼.
- 행위 태양을 '수집'으로만 규정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침해 또는 부당한 이익 획득을 위한 정보 취득 및 전달 행위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조항에서 '탐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Ⅲ. 비밀보호 기간의 범위 지정 필요성

- 법률안 제10조 제1항은 비밀에 대한 비밀표시를 하면서 '보호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밀의 범주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비밀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 기간 비밀로서 관리되더라도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국민 일반에게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되어야 알권리의 충족과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 보호기간을 지정함으로써 비밀에서 해제되는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기관의 정보 독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에 보호기간을 법정하여 두더라도 법률안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밀로 재지정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비밀의 등급과 종류, 비중 등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맞게 보호기간 또는 보호기간의 범위를 법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는 적어도 제10조에서 '보호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도의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IV. 비밀 열람 사유의 법정 필요성

- 법률안 제14조 제2항은 비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구체적인 승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정부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 기관 간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고 비밀 정보 중 일부분에 국한해서라도 소관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의 열람 필요성이 클 수 있음.
- 법률안 제14조에 의하면 비밀정보의 열람에 대한 승인 결정을 비밀 지정권자의 재량에만 맡겨두고 있는데, 재량이 남용될 위험이 있고 또는 부처간 정책적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독자적인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승인권을 사용하여 정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비밀 열람의 승인 기준과 사유를 법에 정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간 정보 공유와 업무상 협의의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비밀 정보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부처간 수평적 통제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V. 비밀 재지정 사유 및 갱신 제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

- 법률안 제16조 제2항 제2호는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밀 지정권자가 재지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비밀의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동 조항에서 비밀의 재지정 사유에 대해서는 법정하고 있지 않음.
- 비밀 지정권자의 임의적, 재량적 판단에 따라 비밀보호 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될 수 있고 계속되는 비밀 유지로 인하여 국민과 사회 일반에 의한 사후적인 비판과 통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음.
- 법률안 제20조 제2항에서 30년을 초과하는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에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30년이 되기 전의 기간 내에서는 비밀 지정권자의 재량 또는 독자적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계속하여 연장될 수 있음.
- 따라서 법률안 제16조 제2항에서 제20조 제2항에 정한 비밀해제 예외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비밀 재지정 사유를 법정하거나 위 제20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재지정 사유를 법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같은 취지에서 비밀의 재지정시 보호기간은 기존 보호기간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규정과 비밀 재지정의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VI.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호에 관한 조사권 삭제 필요성

- 법률안 제23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게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위 조사'에 관한 업무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국정원의 직무 권한 범위는 국정원법 제3조에 의하여 법정되어 있음. 위 법 규정에는 국정원으로서의 권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고 민간 분야에서의 국정원의 업무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 범위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국정원의 직무에 관한 근거규정은 국가정보원법에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한 통제 장치 역시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여 국정원의 권한 범위와 그 통제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따라서 법률안 등 개별 법률에서 국정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신설하는 것은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나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입법임.
- 내용적으로도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안 제2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국정원이 법률안에 의한 각급 비밀 관리기관의 '비밀 분실·누설 등의 경위 조사'권을 갖게 되면 사실상 국정원법이 제외하고 있는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국정원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함.
- 나아가 각급 기관의 비밀 분실·누설 등의 경위 조사권을 매개로 국정원은 각급 기관의 중요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과 그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어 국정원이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 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음.

- 특히 법률안에서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뿐만 아니라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동 비밀 정의 규정이 위 1.항의 의견처럼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근거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비밀 관리 업무 외에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관한 각급 정보 부처의 비밀 관리 업무에 관여하게 되는 결과가 됨. 이는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국정원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에서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국정원의 직무 권한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므로 잘못된 입법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률안 제23조 제1항 제6호의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위 조사'권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VII. 벌칙 규정의 과도한 형량

- 법률안 제28조 내지 제34조는 각종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나치게 형량이 과도함. 위 법률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나친 형벌 규정은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량을 좀 더 낮추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법률안 제30조는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한 비밀수집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조항 역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진술요지



박 경 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 제출)에 대한 검토의견

박 경 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문제 제기

2008년 12월 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이 상정되었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제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을 수정하지 않고 예전에 제출했던 제정안을 2008년 9월 2일 다시 제출한 것이다.

비밀관리법의 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법률에 의거 관리하게 됨으로써 입법부의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은 1964년에 제정되어 지금의 변화된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관리법 제정을 주장해왔고, 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 우리당 이광철의원은 참여연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 12월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상정된 법률안에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위

원회에서는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즉, 비밀관리법은 비밀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면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II. 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의 문제점

첫째, 법률단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둘째,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셋째,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있다.

넷째,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두지 않고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여전히 국정원이 독점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비밀의 수집분야에만 처벌 조항이 과다할 뿐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여섯째, 국정원 권한강화에 따른 감시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Ⅲ. 비밀보호법에 대한 대안적 검토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밀의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둘째, 비밀 지정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비밀의 범주를 한정적 열거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셋째, 최근 미국산 쇠고기 통상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과학·기술 개발과 같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가 구성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 국가이익을 이유로 비밀로 지정되어 알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해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비밀생산기관이 스스로 비밀 지정의 적정성, 비밀의 총량, 보호기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섯째, 비밀의 수집 탐지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을 적정하게 완화하고 비밀로 지정한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비밀을 지정하여 혼란을 야기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법률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 행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차보고서 발간 및 국회 정기 보고와 같은 감독과 통제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비밀의 생산절차 준수 규정을 도입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어 비밀을 생산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비밀이 아닌 것을 비밀처럼 취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일곱째, 30년으로 되어있는 일괄적 비밀보호기간을 등급별로 단축 조정하고, 또 예외 사항인 경우 비밀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기간에 제한이 없는 조항도 일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IV. 결 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사찰 사례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비밀관리법과 함께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은 상기법안을 ‘국정원 권한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상기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해 국익을 앞세워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정보원의 과거 회귀가 우려된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비밀의 지정·보호·해제 등 비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비밀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비밀 지정·관리 및 재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한편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거나 해제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정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에 의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비밀의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국민의 안전보장 및 통상·과학기술 등 국가이익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문서·도화(圖畵)·물건·시설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지정”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5조의 비밀생산권자가 제1호의 사실·문서·도화(圖畵)·물건·시설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비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제”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일반 기록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밀관리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비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u>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u> 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5장 벌칙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비밀 지정·관리·보호 및 해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에 의한 비밀의 관리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비밀의 지정 등	제2장 비밀의 구분과 지정	제2장 비밀의 구분과 지정
<p>제4조(비밀의 구분) ① 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등급을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치명적인 위협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 II 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협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 III 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위협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 <p>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구분할 때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비밀의 범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로 보호·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戰時)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 안보정책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p>제4조(비밀의 등급 구분) ① 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등급을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II 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에 막대한 위협과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III 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에 상당한 위협과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p>② 비밀에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류기준(이하 “비밀등급 분류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모두 일반 문건 등으로서 공개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조(비밀의 구분) ① 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등급을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협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 II 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 III 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 <p>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구분할 때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른 세부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비밀의 범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로 보호·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戰時)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 안보정책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통일·외교에 관한 사항 국방정책, 군사전략·작전 및 무기개발 또는 운용 등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3. 통일·외교 또는 통상에 관한 사항</p> <p>4. 국방정책, 군사전략·작전 및 무기개발 또는 운용 등 군사에 관한 사항</p> <p>5. 국가정보활동 또는 암호 체계에 관한 사항</p> <p>6. 국가이익과 관련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한 위해를 미치는 사항</p>		<p>군사에 관한 사항</p> <p>5. 국가정보활동 또는 암호 체계에 관한 사항</p> <p>6. <삭제></p> <p>7. <삭제></p> <p>③ 제1항의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조(비밀의 지정원칙) ① 비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은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는 비밀로 지정할 수 없다.</p> <p>1. 법령 위반사실의 은폐</p> <p>2. 업무 수행상의 과오 또는 과실 등의 은폐</p> <p>3.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제한 또는 지연</p>	<p>제8조(비밀지정의 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다른 비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다른 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이를 비밀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지정할 수 없다.</p> <p>1. 법률의 위반, 행정상 과오 또는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p> <p>2.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 또는 지연시키려는 경우</p>	<p>제5조(비밀의 지정원칙) ① 비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은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는 비밀로 지정할 수 없다.</p> <p>1. 법령 위반사실의 은폐</p> <p>2. 업무 수행상의 과오 또는 과실 등의 은폐</p> <p>3.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제한 또는 지연</p>
<p>제6조(비밀의 지정 및 취급) ① 비밀은 비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이 생산되어 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 등급의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비밀 지정권자"라 한다)이</p>	<p>제5조(비밀의 생산 또는 취급) 비밀의 생산은 해당 등급의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자(이하 "비밀생산권자"라 한다)가 하고, 비밀의 취급은 해당 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자(이하 "비밀취급권</p>	<p>제6조(비밀의 지정 및 취급)</p>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안과 동일></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지정한다.</p> <p>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지정권자 및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각각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을 지정하거나 취급할 수 있다.</p>	<p>자"라 한다)가 한다. 다만 비밀생산권자는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p>	
<p>제7조(비밀 지정권자) ① I급 비밀 지정권자는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과 행정 각 부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② II급비밀 및 III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I급비밀 지정권자 2. 중앙행정기관(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서 차관급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특별시·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밀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비밀지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p>④ 비밀지정 권한의 위임은 비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 지정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비밀 지정 권한의 위임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6조(비밀의 생산 및 취급인가) ①비밀생산인가권자는 비밀생산권자의 비밀지정 등급을 인가변경 또는 해제한다.</p> <p>②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권자의 비밀취급 등급을 인가변경 또는 해제한다.</p> <p>③비밀의 생산 및 취급의 인가는 대상자가 비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p> <p>④비밀의 생산 및 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비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생산 및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p>⑤비밀생산인가권자·비밀취급인가권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밀의 생산 및 취급인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비밀생산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권자를 겸할 수 있다.</p>	<p>제7조(비밀 지정권자)</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⑤ 비밀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비밀지정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비밀지정권한의 위임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2. 비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p>제8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지정권자는 비밀지정 권한이 있는 비밀등급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소속 직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한다.</p> <p>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비밀취급 인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7조(비밀의 지정) ①비밀생산권자는 제4조제2항의 비밀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비밀을 지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비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밀생산권자의 지정요청에 따라 비밀생산인가권자가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비밀생산권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아래 등급의 비밀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p> <p>③비밀을 지정한 자는 비밀지정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p>	<p>제8조(비밀취급 인가권자)</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제9조(비밀취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체의 소속 임직원에게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II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p> <p>②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이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비</p>		<p>제9조(비밀취급 등의 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대하여는 그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비밀로 지정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그 비밀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개인 또는 기업체는 그 비밀을 보호·관리할 때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10조(비밀 표시 등) ① 비밀에 대하여는 지정과 동시에 등급에 따른 비밀 표시를 하고, 보호기간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비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비밀의 소재를 숨기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비밀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비밀의 일부나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첩보 또는 정보자료 등의 비밀은 그 보존기간과 보호기간을 같게 할 수 있다.</p>	<p>제9조(비밀의 표시 등) ①비밀 생산권자는 지정된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등급·보호기간·보존기간 및 지정이유를 표시한다.</p> <p>②비밀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의 1.5배로 한다. 다만, 비밀 보호기간이 4년 미만일 때에는 보호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그 비밀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비밀이 첩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0조(비밀의 표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제3장 비밀의 보호와 관리</p>	<p>제4장 비밀의 관리 및 해제</p>	<p>제3장 비밀의 관리와 보호</p>
<p>제11조(비밀의 보호·관리의 원칙) ①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p>	<p>제15조(비밀의 수발) ①비밀을 수발함에 있어서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p>	<p>제11조(비밀의 보호·관리의 원칙) ①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하거나 부정</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난·화재·파괴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비밀을 보호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비밀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의 지정·취급·접근·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을 지정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비밀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관리에 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비밀의 원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비밀을 지정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비밀을 지정받은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에서 활용·보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p> <p>②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수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p> <hr/> <p>제16조(비밀의 보관) 비밀은 도난·화재·파괴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의 지정 및 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p>	<p>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수집·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③</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④</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⑤</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⑥</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제12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p> <p>②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에 대하여는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p>	<p>제17조(전자적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관리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보관 또는 유통하는 경우에는 위조·변</p>	<p>제12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관리되는 비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밀 보호·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전자적 접근의 제한 2.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3.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취약점 점검·보완 4. 그 밖에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보호조치 <p>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생산·유통·저장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제공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또는 암호자재 등 기술적 장치(이하 “보안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안시스템을 작동·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암호도구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개발·관리할 수 있다.</p>	<p>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의 암호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보안시스템의 개발 등)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개발·제작하여 필요한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안시스템을 개발·제작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p>		<p>제13조(보안시스템의 개발 등)</p> <p><u><정부안과 동일></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제14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의 열람은 해당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그 비밀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비밀의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I급비밀의 열람은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열람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열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9조(비밀의 열람)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권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p> <p>②비밀취급비인가자에 대한 비밀의 열람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비밀의 열람)</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제15조(비밀의 복제·복사 등) ① 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복사하는 등 비밀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급비밀은 그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II급비밀 및 III급비밀은 해당 비밀 지정권자가 비밀의 복제·복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3. 전자적 수단으로 관리되는 비밀에 대하여 따로 보관용 비밀을 만들 때 <p>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밀원형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함께 보호기간을 표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비밀의 복제·복사 등의 제한) ①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사·타자·인쇄·녹음·촬영·복사·인화 또는 확대하는 등 비밀의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급비밀은 그 비밀을 생산한 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II급 및 III급비밀은 그 비밀을 생산한 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p>②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15조(비밀의 복제·복사 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제16조(비밀의 재지정) ① 비밀 지정권자는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등급의 유지·변경 또는 비밀의 해제 등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밀에 대하여 재지정을 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다만,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 지정권자의 재지정 또는 파기 요청이 있을 때 2.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밀 지정권자가 재지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로서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보호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재지정할 수 있다. 	<p>제24조(재분류) ①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은 각급비밀관리기관에 해당 비밀을 이관하기 전까지는 해당 기관에서 보호 중인 비밀에 대하여 재분류 검토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비밀전문관리기관은 이관된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밀생산기관과 협의하여 등급의 유지·변경 또는 해제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일 3개월 전 2. 비밀생산기관의 재분류 요청이 있는 때 ③ 비밀전문관리기관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접수한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재분류할 수 있다. ④ 비밀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비밀관리전문요원 중에서 비밀의 재분류를 담당할 재분류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p>제16조(비밀의 재지정) ① 비밀 지정권자는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등급의 유지·변경 또는 비밀의 해제 등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②</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③</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④ 비밀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에 대하여 재지정을 하거나 파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7조(비밀의 이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문서로 재지정한 경우 2. 비밀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p>② 비밀기록물 외의 비밀자재·장비 등은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능이 소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급한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p>	<p>제14조(비밀의 이관 등) ① 공공기관은 생산된 비밀을 각급비밀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p>② 각급비밀관리기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비밀을 비밀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의 이관은 비밀전문관리기관에서 재분류를 실시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 및 각급비밀관리기관은 비밀의 원활한 수집과 관리를 위하여 비밀전문</p>	<p>제17조(비밀의 이관 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관리기관으로부터 비밀의 생산·소유·해제 및 이관현황 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비밀전문관리기관은 재분류 결과 비밀에서 해제된 일반 문건 등을 그 다음 해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p>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 이관의 시기·방법·절차 및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비밀의 긴급파기 등)</p> <p>① 공공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비밀을 긴급 파기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그 밖에 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파기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p>		<p>제18조(비밀의 긴급파기 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제19조(보호구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에 대한 접근방지 또는 비밀의 소재를 숨기기 위하여 시설·지역·장비 또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비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보안상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 또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 ·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보호구역) ①공공기관의 장과 국가보안시설·장비·정보통신망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보안시설·장비·정보통신망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p> <p>③보호구역설정자는 제1항의</p>	<p>제19조(보호구역)</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구역에 보안상 필요한 경우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국가보안시설·장비·정보통신망 및 자재에 관한 사항과 보호구역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비밀의 해제와 공개		제4장 비밀의 해제와 공개
<p>제20조(비밀의 해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때 2. 비밀 지정권자의 해제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비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보호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비밀은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정일부 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 및 통일·외교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정보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조약 또는 국제협약의 위반을 초래 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5조(비밀의 해제) ①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은 각급비밀관리기관에 해당 비밀을 이관하기 전에 비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할 수 있다.</p> <p>②비밀전문관리기관은 이관된 비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한 때 2. 비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비밀생산기관의 해제요청이 있을 때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의 해제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때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p>	<p>제20조(비밀의 해제) ①</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② 보호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비밀은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정일부 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 및 통일·외교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정보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조약 또는 국제협약의 위반을 초래 하는 사항 <p>6. <삭제></p> <p>③</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비밀의 해제, 제2항에 따라 비밀에서</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 해제에서 제외되는 비밀에 대하여는 그 비밀의 지정권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지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비밀의 해제, 제2항에 따라 비밀에서 해제되거나 비밀로서 계속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해제되거나 비밀로서 계속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비밀의 공개) ①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비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비밀을 알려야 할 명백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이 증진된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p>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비밀은 공개된 때부터 비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20조(비밀의 공개 등) ①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전문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때 3. 비밀을 생산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된 때. 이 경우 생산한지 3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분류 결과 그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② 공무원(제2조제5호의 공공단체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p> <p>③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본회의 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비</p>	<p>제21조(비밀의 공개) ①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비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안전보장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비밀을 알려야 할 명백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이 증진된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p>②</p> <p><u><정부안과 동일></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밀을 공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 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비밀의 제공 및 설명)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을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람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의 제공 또는 설명 요구를 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국제협상에 필요할 때 및 조약·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술개발·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p>제21조(비밀의 지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p> <p>제22조(안전지출 또는 파기계획) ①공공기관의 장 및 비밀관리기관의 장은 전시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p> <p>②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이 위임하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보존중인 비밀을 무단으로 파기 또는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2조(비밀의 제공 및 설명)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을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람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의 제공 또는 설명 요구를 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국제협상에 필요할 때 및 조약·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4.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5장 비밀관리기관	제3장 비밀관리기관	제5장 비밀관리기관
<p>제23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비밀관리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밀 보호 기술개발 및 보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교육 및 이행 여부 확인 5.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취약점 보완·지원 	<p>제10조(비밀총괄관리기관) ①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생산 및 관리의 제도적 통제와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비밀총괄관리기관이 된다.</p> <p>②비밀총괄관리기관은 비밀제도통제를 위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의 지정 및 해제를 포함한 관리·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비밀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연구 및 법제화 3. 비밀관리기법에 대한 연구 및 표준화 	<p>제23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관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비밀관리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밀 보호 기술개발 및 보급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교육 및 이행 여부 확인 5. 제11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비밀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취약점 보완·지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6. 비밀의 등급별 보유현황 파악 및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위 조사</p> <p>7. 비밀을 지정하거나 비밀의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p> <p>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위를 조사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밀의 분실·누설 등에 따른 피해의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경위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4. 비밀지정의 기준 및 비밀관리 절차의 표준화</p> <p>5.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표준 제정 및 보급</p> <p>③비밀총괄관리기관은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비밀관리제도의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매년 2회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비밀의 생산·소유·이관 및 해제 등 현황 파악</p> <p>2. 비밀관리에 관한 지도·점검 및 교육</p> <p>3. 비밀누설 등에 관한 조사</p> <p>4. 그 밖에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p>	<p><u>6. 비밀의 등급별 보유현황 파악 <후단 삭제></u></p> <p><u>7. 비밀을 지정하거나 비밀의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삭제)</u></p> <p>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u>③ 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위를 조사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밀의 분실·누설 등에 따른 피해의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삭제)</u></p> <p><u>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경위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삭제)</u></p> <p><u>제24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이 법에 의한 비밀의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u>1. 비밀의 등급별·범주별 생산·보유·이관 및 해제 등 현황</u></p>
<p>제24조(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비밀의 지정·보호·관리</p>	<p>제11조(비밀전문관리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비밀전문관리기관이 된다.</p> <p>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p>	<p>제25조(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비밀의 관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2. 비밀 관리 전담 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운영</p> <p>3. 소관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 지정현황 기록 유지</p> <p>4. 소속기관 및 감독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p> <p>가. 비밀 관리 실태 등에 관한 감사 및 점검</p> <p>나. 비밀 소유현황 및 비밀 지정현황의 기록 유지에 관한 실태조사</p> <p>다. 그 밖에 보안업무 및 비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p> <p>5. 그 밖에 소관 비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p>	<p>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전문관리기관</p> <p>2.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특수자료관 중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관</p> <p>②비밀전문관리기관은 비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밀관리전문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③비밀전문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관할 공공기관 및 각급비밀관리기관에서 생산한 비밀의 수집 및 관리</p> <p>2. 비밀총괄관리기관에 비밀의 생산·이관 및 해제 등 현황보고</p> <p>3. 수집된 비밀의 보호</p> <p>4. 비밀의 해제 또는 재분류</p> <p>5. 보호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이 30년 경과했을 때의 비밀의 해제 또는 재분류</p> <p>6. 그 밖에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p> <p>④그 밖에 비밀전문관리기관의 운영, 비밀관리전문요원의 자격 및 지정, 비밀의 수집·관리 및 재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정부안과 동일></u></p>
<p>제25조(그 밖의 공공기관) 제2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그 밖의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비밀의 지정·보호·관리 등에 관한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p> <p>2. 자체 비밀 관리 실태 등에 관한 확인·점검</p> <p>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 지정현황 기록 유지</p> <p>4. 비밀 관리 전담 조직 또</p>	<p>제12조(각급비밀관리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각급비밀관리기관이 된다.</p> <p>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자료관</p> <p>2.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특수자료관 중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특수자료관</p>	<p>제26조(그 밖의 공공기관) 제2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그 밖의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u><정부안과 동일></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는 인원의 지정·운영</p> <p>5. 그 밖에 소관 비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p>	<p>②각급비밀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해당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비밀의 수집 및 관리</p> <p>2. 관할 비밀전문관리기관으로 비밀의 이관</p> <p>3. 비밀전문관리기관에 비밀의 생산·이관 및 해제 등 현황보고</p> <p>4.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p> <p>③각급비밀관리기관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비밀관리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비밀관리기관 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기구 및 비밀 보호·관리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3조(연차보고) 비밀총괄관리기관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조(비밀관리기관의 협조 등)</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p>② <u>공공기관장이 비밀의 분실·누설 등을 파악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u></p>
<p>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위임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u><정부안과 동일></u></p>
제6장 벌칙	제5장 벌칙	제6장 벌칙
<p>제28조(탐지·수집) ①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p>	<p>제27조(탐지·수집 등) ① 비밀을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29조(수집) ① 누구든지 <u>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수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② <u>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비밀을 타인에게 비밀</u></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③우연히 비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기록을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29조(업무상 비밀의 누설 등) ①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거나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28조(업무상 누설 등) ①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30조(업무상 비밀의 누설 등)) ①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거나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30조(가중처벌) ①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p> <p>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29조(가중처벌)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p>	<p>제31조(가중처벌) (삭제)</p>
<p>제31조(비밀의 손괴 등)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p>		<p>제31조(비밀의 손괴 등)</p> <p><정부안과 동일></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병과할 수 있다.	<p>제30조(비밀의 보호조치 불이행 등)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보관 등 비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비밀을 취급하는 자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무단으로 손괴 또는 파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③비밀을 취급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무단으로 손괴 또는 파기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p> <p>⑤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u>제32조(비밀의 불법지정) ①</u> <u>비밀 지정권자가 제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비밀로 지정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p> <p><u>②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u></p>
<p>제32조(신고·제출의 불이행) ① 비밀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비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자가 수사기관이나 그 비밀을 생산한 기관으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1조(신고·제출의 불이행) ①비밀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비밀을 우연히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점유한 자가 수사기관이나 그 비밀을 생산한 기관으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3조(신고·제출의 불이행) ① 비밀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u>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비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자가 수사기관이나 그 비밀을 생산한 기관으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u>6개월</u>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제32조(보호구역 침입) 비밀을 탐지 또는 수집하기 위하여 제23조의 보호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위법성의 조각) 제28조 및 제29조의 행위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위법성의 조각) 제29조 및 제30조의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 소속 공공기관 또는 국가정보원 등에 자수하거나 그 죄를 지은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자수감경)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제35조(형의 감면) <정부안과 동일>
부칙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산·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비밀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각각 해당 비밀 등급으로 지정된 비밀로 본다.	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생산·관리되는 비밀은 이 법에 의한 비밀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생산·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비밀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각각 해당 비밀 등급으로 지정된 비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각각 그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비밀취급 인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각각 그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중전 비밀의 재지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 제1항에 따른 비밀(이하 "중전 비밀"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중전 비밀을 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지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8. 9. 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광철의원안) 2005. 12. 27.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안) 2009. 9.
		<p><u>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u>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제2호 중 “군사기밀보호법”을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으로 한다.</p>	<p>③(다른 법률의 개정)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 각 목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기록물관리기관 중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밀전문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비밀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p> <p>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특수자료관은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비밀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관은 비밀전문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p> <p><u><정부안과 동일></u></p>

【정부안과의 차이점】

- 0) 제목을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2005년 참여연대 의견이 반영된 당시 이광철의원안과 제목이 동일)하여 비밀의 관리가 주요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1) 법의 목적(1조)에서 참여연대안은 비밀의 관리를 중점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음.
- 2) 정부안이 비밀의 범주를 종전의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것에서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으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비밀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 범주를 제한 하였음. (2조)
- 3) 비밀의 구분(4조) 3급비밀을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비밀에서 상당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로 규정하여 오남용될 가능성을 줄였음.
- 4) 비밀의 범주에서 통상부분을 제외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통상부분이 비밀로 지정될 가능성을 줄이고 국가이익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였음. (4조 등)
- 5) 비밀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음. (4조 3항)
- 6) 비밀의 보호·관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되 비밀의 탐지라는 막연한 개념을 제외하여 탐지를 이유로 비밀관리법의 적용이 오남용될 여지를 줄였음. (11조)

- 7) 비밀의 재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음. 참여연대 안에서는 연 1회 이상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음. 또한, 비밀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에 대하여 재지정을 하거나 파기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강제하였음. (16조)
- 8) 비밀지정 이후 30년이 지나면 해제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예외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여연대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외만이 인정되도록 하였음. (20조)
- 9) 비밀이 해제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함을 분명히 하였음. (20조)
- 10) 정부안에서 비밀의 분실과 누설에 대한 경위조사권한과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분실·누설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하고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외조항 까지 주었으나 참여연대안은 국정원의 위와 같은 권한 부분을 삭제하였음. (23조)
- 11) 공공기관장이 비밀의 분실공공기관장이 비밀의 분실·누설 등을 파악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였음. (27조)
- 12) 벌칙조항에서 탐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의도하지 않은 비밀정보의 접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막고 비밀수집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등 과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3년이하로 줄이고 외국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가중처벌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벌칙규정을 축소 하였음. (29조)

- 13) 외국에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 하였음. (정부안 30조 삭제)
- 14) 정부안에는 비밀의 수집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과도하고 비밀의 불법지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비밀관리법이 악용될 여지가 있음. 참여연대 안에서는 불법지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악용될 가능성을 줄였음. (32조)
- 15) 위법성 조작과 관련하여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정부안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 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로 하고 있으나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때로 규정하여 적용이 수월하도록 함. (34조)
- 16) 시행당지 지정되어있는 비밀은 2년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전비밀도 법률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였음. (부칙 3조)

Ⅲ. 참고 자료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77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103
◆ 진술인 이력사항	12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819
----------	-----

제출연월일 : 2008. 9. 2.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서 현행 「보안 업무규정」은 그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의 비밀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으로 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밀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의 지정·보호·해제 및 침해행위 처벌 등 비밀의 보호·관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밀의 개념 확대 및 비밀의 범주 구체화(안 제2조 및 제4조)

(1) 현재 비밀의 개념은 국방·외교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고 그 범주가 분명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비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음.

(2)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를 전시(戰時)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확히 함.

(3) 앞으로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항도 비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비밀의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밀 지정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비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밀의 지정원칙 및 비밀 지정권자(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비밀 지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과도한 비밀 지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2) 비밀 지정의 원칙과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비밀 지정권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명확하고 통일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비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의한 과도한 비밀 지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

- (1)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적 형태의 비밀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공공기관은 비밀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제공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전자적 형태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비밀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밀의 재지정 및 비밀의 이관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 (1) 비밀은 그 지정 후 보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최소한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의 비밀 보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비밀기록물의 경우 그 원본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지난 비밀기록물 등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비밀의 재지정 및 보호기간 만료 후의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비밀 관리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비밀 자동해제제도의 도입(안 제20조)

- (1) 공공기관에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비밀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체계적인 비밀 관리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 (2) 해당 비밀이 유효한 전시계획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 최초 지정일부터 30년이 경과하면 비밀에서 자동해제되도록 함.
- (3)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 관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비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비밀 공개제도의 도입(안 제21조)

- (1)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경우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대통령 · 국무총리 · 감사원장 ·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

이익이 증진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비밀관리기관의 임무 및 기능의 명확화(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1) 비밀관리에 관한 각 공공기관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등 기획업무와 교육 및 취약점 확인·지원 등의 총괄업무를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비밀 관리 전담 조직의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등 각 공공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함.
- (3)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비밀관리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아. 비밀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 (1) 현행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의 처벌규정을 군

사기밀 등이 아닌 국가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비밀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군사기밀 등이 아닌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 등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 등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비밀에 관한 처벌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비밀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비밀의 지정·보호·해제 등 비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비밀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비밀의 지정 등

제4조(비밀의 구분) ① 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등급을 구분한다.

1. 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치명적인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
2. 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
3. I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구분할 때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비밀의 범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로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1. 전시(戰時)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 안보정책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3. 통일·외교 또는 통상에 관한 사항

4. 국방정책, 군사전략·작전 및 무기개발 또는 운용 등 군사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활동 또는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이익과 관련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한 위해를 미치는 사항

제5조(비밀의 지정원칙) ① 비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은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는 비밀로 지정할 수 없다.

1. 법령 위반사실의 은폐

2. 업무 수행상의 과오 또는 과실 등의 은폐

3.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제한 또는 지연

제6조(비밀의 지정 및 취급) ① 비밀은 비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이 생산되어 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 등급의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비밀 지정권자”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지정권자 및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각각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을 지정하거나 취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지정권자) ① I 급비밀 지정권자는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과 행정 각 부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II 급비밀 및 III 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I 급비밀 지정권자
2. 중앙행정기관(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서 차관급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특별시·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밀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비밀지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비밀지정 권한의 위임은 비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 지정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비밀지정 권한의 위임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비밀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비밀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비밀지정 권한의 위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2. 비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제8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지정권자는 비밀지정 권한이 있는 비밀등급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소속 직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 인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비밀취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체의 소속 임직원에게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II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이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비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대하여는 그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비밀로 지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그 비밀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개인 또는 기업체는 그 비밀을 보호·관리할 때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비밀 표시 등) ① 비밀에 대하여는 지정과 동시에 등급에 따른 비밀 표시를 하고, 보호기간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비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비밀의 소재를 숨기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비밀의 일부나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첩보 또는 정보자료 등의 비밀은 그 보존기간과 보호기간을 같게 할 수 있다.

제3장 비밀의 보호와 관리

제11조(비밀의 보호·관리의 원칙) ①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난·화재·파괴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비밀을 보호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비밀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의 지정·취급·접근·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을 지정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비밀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관리에 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원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비밀을 지정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비밀을 지정받은 개인 또는 기업체를 말한다)에서 활용·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에 대하여는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관리되는 비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밀 보호·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전자적 접근의 제한
2.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3.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취약점 점검·보완
4. 그 밖에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보호조치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생산·유통·저장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제공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또는 암호자재 등 기술적 장치(이하 “보안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안시스템을 작동·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암호도구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개발·관리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시스템의 개발 등)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개발·제작하여 필요한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안시스템을 개발·제작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4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의 열람은 해당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

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그 비밀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비밀의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I급비밀의 열람은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열람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열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밀의 복제·복사 등) ① 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복사하는 등 비밀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급비밀은 그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II급비밀 및 III급비밀은 해당 비밀 지정권자가 비밀의 복제·복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3. 전자적 수단으로 관리되는 비밀에 대하여 따로 보관용 비밀을 만들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밀원형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함께 보호기간을 표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의 재지정) ① 비밀 지정권자는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등급의 유지·변경 또는 비밀의 해제 등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밀에 대하여 재지정을 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다만,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밀 지정권자의 재지정 또는 파기 요청이 있을 때
2.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밀 지정권자가 재지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로서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보호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이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지정한 경우
2. 비밀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 비밀기록물 외의 비밀자재·장비 등은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능이 소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급한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비밀의 긴급파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비밀을 긴급 파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그 밖에 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파기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구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에 대한 접근 방지 또는 비밀의 소재를 숨기기 위하여 시설·지역·장비 또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비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보안상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 또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구분·설정대상 및 설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비밀의 해제와 공개

제20조(비밀의 해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때
2. 비밀 지정권자의 해제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비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비밀은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정일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 및 통일·외교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정보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조약 또는 국제협약의 위반을 초래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해제에서 제외되는 비밀에 대하여는 그

비밀의 지정권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밀의 해제, 제2항에 따라 비밀에서 해제되거나 비밀로서 계속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비밀의 공개) ①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비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비밀을 알려야 할 명백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이 증진된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비밀은 공개된 때부터 비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비밀의 제공 및 설명)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을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람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의 제공 또는 설명 요구를 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국제협상에 필요할 때 및 조약·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술개발·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5장 비밀관리기관

제23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비밀관리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밀보호 기술개발 및 보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교육 및 이행 여부 확인
 5.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취약점 보완·지원
 6. 비밀의 등급별 보유현황 파악 및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위 조사
 7. 비밀을 지정하거나 비밀의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

위를 조사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밀의 분실·누설 등에 따른 피해의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경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지정·보호·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비밀 관리 전담 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운영
3. 소관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 지정현황 기록 유지
4. 소속기관 및 감독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비밀 관리 실태 등에 관한 감사 및 점검
 - 나. 비밀 소유현황 및 비밀 지정현황의 기록 유지에 관한 실태 조사
 - 다. 그 밖에 보안업무 및 비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소관 비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그 밖의 공공기관) 제2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그 밖의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지정·보호·관리 등에 관한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2. 자체 비밀 관리 실태 등에 관한 확인·점검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 지정현황 기록 유지
4. 비밀 관리 전담 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운영
5. 그 밖에 소관 비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비밀관리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비밀관리기관 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기구 및 비밀 보호·관리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실·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탐지·수집) ①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업무상 비밀의 누설 등) ①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거나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조(가중처벌) ①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조(비밀의 손괴 등)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신고·제출의 불이행) ① 비밀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비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자가 수사기관이나 그 비밀을 생산한 기관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위법성의 조각) 제28조 및 제29조의 행위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 소속 공공기관 또는 국가정보원 등에 자수하거나 그 죄를 지은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산·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비밀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각각 해당 비밀 등급으로 지정된 비밀로 본다.

제3조(비밀취급 인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각각 그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군사기밀보호법”을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밀의 보호 및 관리’ 업무는 현행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정부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요인이 없음
- 현재 쏘 공공기관은 보안담당관 및 비밀취급자 등을 지정하여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본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업무 성격으로 예산부담 또는 재정요인이 본질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및 미첨부 사유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35호) 제3조제1항 단서중 제2호인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됨
- ‘비밀의 보호 및 관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 제2호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임
- 또한, 同法の 소관부처는 국가정보원으로서,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 및 국정원법에 의거,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보안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10.7, 1999.3.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10.7>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제3조(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2장 비밀보호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I급비밀·II급비밀 및 III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I급비밀로 한다.

제5조(암호자재의 제작공급 및 반납) ①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호자재의 사용기관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안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0.7, 1999.3.31>

②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

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① I 급비밀 및 암호 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10.7, 1999.3.31, 2001.1.29, 2002.2.9, 2008.12.31>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4. 각 부·처의 장
5. 국정원장
6. 삭제<2008.12.31>
7. 국무총리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8. 대통령실장
9. 대통령 경호처장
10. 검찰총장
1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육군의 1,2,3군 사령관
1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② II 급 및 III 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10.7, 1999.3.31, 2006.3.29, 2008.12.31>

1. I 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3.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4.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제8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영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④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분류)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등급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동등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제10조(분류원칙)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II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11조(분류지침)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예고문)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재분류)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개정 1981.10.7, 1999.3.31>

1. 긴급 부득이 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 소속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④비밀을 존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존안된 비밀자료는 존안기간중 이를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7>

제14조(표지)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수발) 비밀을 수발함에 있어서는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수발 제한) 비밀은 전신·전화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1.10.7]

제17조(영수증) I 급비밀 및 II 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사용한다.

제18조(보관) 비밀은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여행중의 비밀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국내경찰기관 또는 국외주재공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관책임자)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보관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

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I 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 및 암호자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제22조(비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등 비밀의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또는 복사하지 못한다.

1. I 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II 급 및 III 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구분이 "과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과기시기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개정 1981.10.7>

제23조(비밀의 열람) ①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 비인가 자에게 비밀을 열람·공개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제24조(비밀의 공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25조(비밀의 지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7조(비밀문서의 통제)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통제를 위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2.7]

제29조(비밀소유현황통보) 각급 기관의 장은 연2회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10.7, 1999.3.31>

제30조(보호구역) ①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개정 1981.10.7>

③보호구역설정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1.10.7>

제3장 신원조사

제31조(신원조사) ①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제32조(조사의 실시)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1.10.7, 1999.3.31>

제33조(권한의 위임)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군무원·「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

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1.10.7, 1999.3.31, 2006.2.8>

제34조(조사결과의 처리) ①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10.7>

제4장 보안조사

제35조(보안측정) 국정원장은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한다.<개정 1981.10.7, 1999.3.31>

제36조(측정대상) 보안측정은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하"보안목표시설"이라 한다)과 선박·항공기등 중요장비(이하"보호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81.10.7>

제37조(측정의 실시) ①보안측정은 국정원장이 그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 또는 관계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1.10.7, 1999.3.31>

②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와 그 감독기관의 장은 국정원장이 그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10.7, 1999.3.31>

③국정원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안측정상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81.10.7, 1999.3.31>

제38조(전말조사)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개정 1981.10.7, 1999.3.31>

제39조(보안감사) 이 영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감사를 실시한다.<개정 1981.10.7, 1999.3.31>

제40조(통신보안감사)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모든 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한다.<개정 1981.10.7, 1999.3.31>

제41조(감사의 실시) ①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81.10.7>

②정기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실시한다.

③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정책자료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신설 1981.10.7>

제4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1999.3.31>

②국정원장은 보안조사의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1999.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

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0.7]

제43조(권한의 위임) ①국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안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군,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 기타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조사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3.31, 2006.2.8>

②국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81.10.7]

제5장 보직

제44조(보안담당관)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영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5조(계엄지역의 보안) ①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1.10.7>

②제1항의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평상시의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한다.

부칙 <제5004호, 1970.5.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분류된 비밀은 이 영에 의하여 분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78호, 1981.10.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 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동조제2항제2호중 "중앙행정관서인 청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며, 동항제4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4호(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에 한한다)"로 한다.

4. 각 부·처의 장

7.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제1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제39조 및 제40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안전기획부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안전기획부장"을 "국정원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에

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로 한다.

①내지 <28>생략

부칙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시행령) <제16609호, 199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생략

부칙 (여성부직제) <제17116호,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부칙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7517호, 200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부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 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3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431호, 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무총리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
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8. 대통령실장

9. 대통령 경호처장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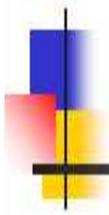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3.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4.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90> 부터 <175> 까지 생략



진술인 이력사항

1.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학력 및 경력

-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교 법학박사
- 동국대 법대 교수
-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
- 한국공법학회 감사

2. 김성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변호사

○ 학 력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B.A., 1992)
-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Magna Cum Laude, 2005)
- 미 New York주 및 New Jersey주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2005)

○ 경 력

-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1991)
- 법제처 사무관 (1991-1999)
- 법제처 법령총괄담당 서기관 (1999-2002)
- 국비장기국외훈련Syracuse Law School (2002-2005)
- Syracuse Law Review 편집위원 (2004-2005)
- Justinian Honorary Law Society of Syracuse Law School 위원 (2005)
-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산업자원부 담당 (2005-2006)]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행정법 및 법제실무강의 (2006-2007)]
-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과기부, 특허청, 중기청담당 (2007)]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교육심판팀장 (2007)
-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정법강의 판례와 조문으로 알아보는 행정법 사이버강의 (2006-2009)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2007-)
- 법무법인(유) 태평양 (2007-현재)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200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자문위원회 위원 (2008-2009)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09.1.-)
- 국방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009-)

-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09.8.-)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법률자문 변호사 (2009.6.-)

○ 저 서

-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2008.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 FTA 및 BIT상 투자자보호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미국법제도 연구 (2007)
- 판례와 조문으로 알아보는 행정법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강좌 (2006)]
- The Victims of Terrorism Tax Relief Act of 2001 is a beneficial Law, but sets a bad Precedent (2007.5.)
- 미국의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절차 [Negotiated Rulemaking (2006.1.)]
-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관한 연구 (1994.5.)

3. 류신환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학력 및 경력

- 199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9.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
- 1998. 12.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2004.~현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2008.~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4.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력 및 경력

- 1988년 8월 - 1992년 5월 하버드대 물리학과 수료
- 1992년 9월 - 1995년 5월 UCLA로스쿨(J.D.) 수료.
- 1995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
- 1995년 7월 - 1997년 12월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상임변호사
- echoing green foundation 공익법률사업 펠로우쉽 2회 수상
- MTV/Mademoiselle 재단 연례 Brick Award 상 수상
- 1998년 7월 미국 와싱턴 주 변호사시험 합격.
- 1998년 5월 - 1999년 3월 와싱턴주 법률구조공단 콜럼비아법률 서비스 상임변호사로 활동.
- 1999년 3월 - 2002년 9월 한동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민사불법 행위, 반독점법 및 헌법)
- 2002년 9월 - 2004년 6월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대에서 영미법, 헌법,
- 민사불법행위 강의 (시간강사)
- 2000년 12월 - 2005년 8월 법무법인 한결 외국법 자문 (금융, 기업합병, 투자, 영화제작 및
- 배급,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국제거래 및 국제소송 시민단체를 위한 공익소송 및 헌법 소송에 대한 비교법적 자문)
- 2005년 9월 -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법률자문역
- KAIST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2009년 3월 - 현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위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정조사

2009. 11

국회정보보호위원회